

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: 제1161호
- 다. 제출일자: 2023. 8. 14.
- 라. 회부일자: 2023. 8. 21.

2. 제 안 사 유

-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 공공건축물이자 미래 건축물의 모델로서, 2012년 개소 이래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시체험 교육을 통한 시민 기후 소양 함양에 기여해 왔음.
- 기존 위탁기간 종료시점(~'23.12.31.)이 도래함에 따라, 기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의 역할도 추가하여 신규위탁함으로써 서울시 환경교육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·운영

나. 위탁기간: 3년('24. 1. 1. ~ '26. 12. 31.)

다. 민간위탁 필요성

-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,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기반이 없어 환경교육 정책 및 연구·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전담 기구의 구축이 필요함.

※ 2023.7. 현재 환경교육센터 미지정 광역지방자치단체: 2개(서울, 광주)

-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서 시설 유지·관리를 위하여 건물에너지 분야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함.
- 환경·에너지 교육 프로그램·교재 개발, 전문인력 양성, 환경교육 연구·조사 등 서울시 환경교육 기반 구축 및 직접 교육·전시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업무 능력과 경험이 필요함.
- 따라서,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기술, 경험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, 인력·예산 등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라. 위탁사무 내용

[서울에너지드림센터 시설 관리]

-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물 에너지 모니터링
-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건물 및 야외부지 관리
- 전시·체험시설물 및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
- 제반 시설, 장비 등 재산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등 방문객 안전사고 관리

[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사무]

- 신재생에너지 최신 동향·기술 정보 제공 및 제로에너지하우스 운영 모델 공유
- 에너지·기후위기 주제 전시 기획 및 스마트 그린 전시관 구축
- 시민 참여 에너지·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- 인력 관리 및 각종 행정업무 등

[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(신규)]

- 서울시 환경교육 정책 수립 관련 연구 및 조사
- 국가, 기초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주체 간 연계·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
- 사회·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·보급
-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기반 구축

마. 시설 개요

- 시설명/소재지: 서울에너지드림센터/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14
- 규 모: 연면적 3,762 m^2 (지하1층/지상3층), 대지면적 13,039 m^2
- 주요시설: 홍보·전시관, 기후변화배움터, 체험학습실, 다목적실 등
- 준공년월: 2012. 9. 19.(개관일: 2012.12.12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※ 20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('23. 7. 23.)

사. 소요예산: 1,545백만원(예산지원형, 시설형 위탁+사무형 위탁)

※ '23년 예산 대비 3% 증액,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예산(약 3억원) 신규 편성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
-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2024년 예산편성(예정)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정·운영 현황('23.7. 현재)

| 구분 | 센터명 | 지정기관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부산광역시 |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| 부산환경보전협회 |
| 대구광역시 |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| (사)대구환경교육센터 |
| 인천광역시 |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|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|
| 대전광역시 |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| 대전환경운동연합 |
| 울산광역시 |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| (재)울산연구원 |
| 세종특별자치시 |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| 세종환경교육센터 |
| 경기도 |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| 경기환경에너지지진흥원 |
| 강원특별자치도(2) | 강원도 환경교육센터 1호 | 강원도자연학습원 |
| | 강원도 환경교육센터 2호 | 한국DMZ평화생명동산 |
| 충청북도 |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| 청주국제에코플렉스((사)풀꿈환경재단) |
| 충청남도 |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 | 광덕산환경교육센터 |
| 전라북도 |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 | 자연환경연수원((사)자연생태환경연구소) |
| 전라남도(3) |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제1호 | 전라남도자연환경연수원 |
| |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제2호 | 신안군생태교육원((사)섬생태연구소) |
| |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제3호 | YMCA가사리생태교육관 |
| 경상북도 | 경상북도 환경교육센터 | 경상북도환경연수원 |
| 경상남도 |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 | 경상남도환경교육원 |
| 제주특별자치도 |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| (사)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|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동의안은 에너지제로 건물과 전시관으로서 의미가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(이하 “에너지드림센터”)가 녹색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홍보·전시·교육의 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위탁(재위탁)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(이하 “환경교육센터”)의 역할을 추가하여 신규 위탁¹⁾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민간위탁 조례”)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<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>

-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**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1)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('22.08.) p.30

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

②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 되는 경우

나. 검토 의견

1)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

- 본 동의안은 에너지드림센터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전자는 ‘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’(23. 08.), 후자는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와 제1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.
-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추가는 기존 에너지드림센터의 시설 인프라의 활용과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사무는 ①서울시 환경교육 정책 수립 관련 연구 및 조사, ②국가·기초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, ③사회·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, ④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기반 구축 등임.
- 이를 포함한 위탁사무는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와 “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”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.

<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>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~2. (생략)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(생략)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~8. (생략)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2)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
-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위탁사무명, 추진근거 및 필요성, 위탁사무 내용,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, 본 동의안에는 제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시설 위치도가 누락되어 있는바,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안이 제출되도록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<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>

제4조의4(민간위탁 동의안)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위탁사무명 |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|
| 3. 위탁사무 내용 | 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<u>위치도</u>) |
| 5. 민간위탁기간 | 6. 수탁자 선정방식 |
| 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| 8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|
| 9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| |

3) 민간위탁 추진 절차

- 에너지드림센터와 환경교육센터 관리·운영 사업은 2023년 7월 신규 민간 위탁 추진계획²⁾이 수립된 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³⁾한 바 있음.
-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신규(공모)사업은 사전조사 → 추진계획 수립 →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→ 시의회 보고(동의) → 시의회 의결 →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, 본 계획은 현재까지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.

2)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 신규 민간위탁 추진 계획(기후환경정책과-10056, '23.7.20.)
3) 20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(기후환경정책과)(조직담당관-7942, '23.7.26.)

<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>

| 부서명 | 위탁사무명 | 유형 | | 위탁기간 | 심의결과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|------|----|
| 기후환경본부 (기후환경정책과) |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| 시설형 | 신규 | 3년 | 적정 | |

4) 민간위탁 성과보고서⁴⁾ 개선요청사항 요약

- **종합점수:** 현 위탁사는 종합평가 결과 68.04점을 획득하였음. 이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(’22.8.)의 재계약 기준점수인 75점보다 낮은 수준이며, 감점 항목에서 (-)13.1점을 받은 것에 기인함.
- **사업 지표:** 개별사업 성과 지표발굴 및 목표치 설정에 있어 체계성이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, 사업의 성격에 맞게 사업지표를 설정하고 해당 지표가 사업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목표인지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성과 위주의 관점에서 과업을 설정하고 그 성과지표의 합리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.
- **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:**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,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, 예산집행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함.
- **서울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:** 2023년 2월 이루어진 특정감사에서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, 이 중 3건은 해외 여비 부적정 사용 등 예산 집행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환수 조치(2,964천원)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6건은 위원회 규정 등의 정비 소홀, 활동비 지급 증빙자료 정리 미흡 등에 관한 것임.

4)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-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운영-(’23.06., 서울특별시)

5) 종합 의견

-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내에 환경교육 정책 수립 관련 연구·조사,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를 구축하여 기존 민간위탁 사무와 연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교육 시너지 효과 및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,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(위치도 누락), 민간위탁 추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, 현 위탁사의 종합평가 점수가 재계약 이 불가한 수준인 68.04점으로 매우 낮은 점과 사업지표 설정, 서울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등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,

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의 다양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·감독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조속히 시정 처리하고 이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.